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(일부인정된죄명사기 방조)·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방조



[창원지방법원 2021. 12. 16. 2021고합182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조영찬(기소), 송민하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.

【이유】

1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